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업체의 등록말소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16일

경기도지사

상 호 / 대표자	소 재 지	건설업종 (등록번호)	처분내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오동건설(주) 유**	경기도 화성시 영통로26번길 15, 114호 (반월동, 명성프라자)	건축공사업 07-0282	등록말소 (2020.11.07.)	건설업 등록기준 (자본금/기술인력) 미달로, 영업정지 처분(2019.11.30.~ 2020.5.29.) 받은 후, 종료일까지 미보완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